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부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정 2017.12.29. 규정 제6호

개정 2020.09.18. 규정 제87호

개정 2020.12.28. 규정 제9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부천도시공사의 사장 및 감사, 이사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부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이사회는 부천도시공사의 사장 및 감사,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기 만료의 2월 이전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고, 예정되지 않은 결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및 시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사회에서 위원을 추천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임원의 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결원이 동시 발생 또는 최초 결원발생 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시 공무원인 당연직이사와 노동자이사는 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12.28.>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
 3.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⑤ 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추천 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⑥ 공사의 임·직원(비상임 이사는 제외하되, 노동자이사는 포함한다) 및 시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12.28.>

- ⑦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사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토록 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임원 후보자인 경우
 2. 임원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4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임무) ①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 심사
2. 사장 및 비상임 이사 후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추천(다만, 조례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상임이사 후보를 사장에게 추천
4. 인사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한 임원 공개모집 계획 수립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임원의 추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서약서 등을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위원회는 위원을 포함하여 이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출석자 등”이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거나, 안건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자 등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09.18.]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해당 공사에서 임원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과장)급 이상의 직원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3. 그 밖에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임원후보의 추천절차) ① 제6조에 따른 임원 공개모집 계획에는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개모집 공고, 지원서 접수, 임원후보 추천대상자 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임원 후보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임원 임기종료 등 미리 결원이 예상되는 경우 인사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임기 중 결원 발생시에는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임원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시와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털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하며, 모집 및 공고 기간은 1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상 모집 및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동자이사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사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모집 및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 및 공고 기간은 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20.12.28.>

⑥ 제4항 및 제5항의 모집공고에는 임용예정직위, 선발인원, 응모자격, 직무수행 요건, 임용계약 및 보수, 지원서 접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모집하는 경우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⑧ 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⑨ 위원회는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⑩ 위원회는 임원후보자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 전문기관은 인재채용·인재추천·인사컨설팅 등 인사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와 관련된 상당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⑪ 시장 및 사장은 우수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시에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채용전문기관, 대학, 관련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임원후보자로 응모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제10조(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① 임원후보 응시원서 접수는 위원회의 위원장 주관으로 위원회의 간사로 하여금 실무지원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시원서 접수는 지원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방문접수, FAX,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원으로 응모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

2. 직무수행계획서(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3. 자기소개서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한다)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적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이사로 응모할 자는 공사에 1년 이상 재직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

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원자 신청서
2.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공사 소속 근로자 30명 이상의 지원자 추천서. 다만,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노동조합 추천서로 한다.

제11조(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공사가 정하는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를 심사한다.

1.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2. 경력·학위 등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3. 과거의 경영실적·경영기간 등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해당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위원회의 별도결의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12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공사가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응모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면접심사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원서, 직

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을 참고로 하여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가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최종 임원후보자는 면접심사결과(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결과에 따른다)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최종 후보자 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서류 및 면접 심사 시 응모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하며, 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하고,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투표로서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서류심사는 절대평가하고 면접심사는 응모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상대 평가한다.

⑥ 임원후보 심사평가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류심사 평가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면접심사 평가표에 따른다. 다만, 위원회의 별도 결의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13조(임원 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는 공사가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결원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2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임원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사장 및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의 경우는 시장, 상임이사의 경우는 공사의 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인 시장 또는 공사의 사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임원 후보자 추천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임원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를 작성하고,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와 함께 임명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명) 임용권자인 시장 및 사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천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원격영상회의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그 밖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자료의 사전수집, 회의안건의 사전검토, 별도의 자문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검토수당 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9.18.]

제16조(관련자료 제공) ① 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또는 공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이나 공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채용과정 공개) 시장 또는 사장은 임원의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기타)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후보자 심사기준, 추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자체규정 등으로 정한다.

제19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며,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부 칙

(2017.12.29. 규정 제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가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처리된 사무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09.18. 규정 제8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2.28. 규정 제9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제11조제2항 관련)

구 분	세 부 기 준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경영능력	▪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위기관리 능력 ▪ 노사화합과 기업의 성장·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 친화력을 바탕으로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양 ▪ 건전한 기업윤리관, 청렴성, 책임관 및 솔선수범하는 실행력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 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지향적인 의지 ▪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 관련산업분야에 종사한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 ▪ 관련 산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 건실한 재무구조 유지 및 적정이윤 실현을 위한 기업적 마인드 ▪ 관련 산업을 통한 국민후생 증대를 실현할 수 있는 공익적 마인드

[별지 제1호서식]

지 원 서 (제10조제2항 관련)									
공모 직위명									
사진부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자택]() -	휴대폰		E-mail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재지	평점/만점	학 위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교			/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최종학위 논문 주제							
병역 사항		병 역	필 , 병역특례, 면제 (면제시 사유 :)						
		군 별		계 급		복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자격 및 면허		종 류	취득년월일	어 학	외국어명	점수	검정기관		
경 력 사 항		근 무 처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			
						~			
						~			
						~			
						~			
						~			

(뒷면)

① 관련분야 논문발표 등 업적 (중요도 순 작성)

구 분	제 목	게재년월	게재기관
논 문			
기 타			

※ 주요업적을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② 연구 및 과제수행 주요업적 (중요도 순 작성)

과제명	주요내용	연구기간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③ 연구기술, 포상실적 등 그 밖의 업적

④ 관련분야 특허·사업화 성공 등 국가발전 기여 업적

⑤ 국제화 활동 사항 (국제적인 공동과제 관리, 국제 전문위원회 참여 등)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일체 허위 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자 :

(날인 또는 서명)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0.12.28.>

부천도시공사 노동자이사 지원자 신청서 (제10조제3항 관련)			사진 3×4cm
성명			
주소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사원번호	
소속부서		직 급	
근무이력	근무기간	근무부서	주요업무
위와 같이 부천도시공사 노동자이사 지원자로 신청합니다. 20 년 ○ 월 ○ 일 지 원 자 : (인) 부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직무수행계획서(부천도시공사 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1부 2. 자기소개서 3.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4. 입후보자 추천서(별첨 양식) 1부 5.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주 : 허위경력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0.12.28.>

부천도시공사 노동자이사
지 원 자 추 천 서 (제10조제3항 관련)

☐ 노동자이사 지원자 : 소속 ○○부 성명 ○ ○ ○

위 사람을 부천도시공사 노동자이사 지원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 월 ○ 일

연 번	소속부서	사원번호	성 명	서 명

부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0.12.28.>

부천도시공사 노동자이사
노 동 조 합 추 천 서 (제10조제3항 관련)

□ 노동자이사 지원대상자 : 소속 ○○부 성명 ○ ○ ○

위 사람을 부천도시공사 노동자이사 지원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 월 ○ 일

○ ○ ○ 노동조합 위원장 (인)

부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서류심사 평가표(제12조제6항 관련)

후 보 명 : _____

평 가 요 소	배 점	평 가 점 수				
		A (20점)	B (18점)	C (16점)	D (14점)	E (12점)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경영능력	20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20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 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20					
관련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20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20					
합 계	100	점				

※ 평가점수의 해당 등급 란에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 합계 기재

년 월 일

심사위원 : (날인 또는 서명)

[별지 제3호서식]

면접심사 평가표 (제12조제6항 관련)

후 보 명 : _____

구분	평 가 항 목	점 수					점수 (/만점)
		수	우	미	양	가	
전문성 (20)	1.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5	4	3	2	1	/20
	2. 수익창출과 효율성 위주의 기업경영마인드	5	4	3	2	1	
	3. 현안과제 정확한 진단과 정책대안 제시능력	5	4	3	2	1	
	4. 환경변화 예측통한 정책목표와 전략 구상능력	5	4	3	2	1	
리더십 (20)	1. 장기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추진력	5	4	3	2	1	/20
	2. 술선수범하는 실행력 및 리더로서의 통솔력	5	4	3	2	1	
	3. 다양한 이해관계자 설득, 조정하는 협상능력	5	4	3	2	1	
	4. 조직구성원의 잠재력 극대화 및 활용능력	5	4	3	2	1	
경영 혁신 (20)	1. 개혁지향의 합리적 논리와 지속적 추진의지	5	4	3	2	1	/20
	2. 조직 문화혁신 전략수립 및 추진능력	5	4	3	2	1	
	3. 관련법령, 제도 개선 추진능력	5	4	3	2	1	
	4. 조직의 사업과 경영의 근본적인 변화능력	5	4	3	2	1	
노사 및 직원 친화력 (20)	1.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역량극대화 능력	5	4	3	2	1	/20
	2.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해결 능력	5	4	3	2	1	
	3. 직원의 안전과 회사의 위기관리 능력	5	4	3	2	1	
	4. 직원의 복리후생 개선의지와 추진능력	5	4	3	2	1	
윤리관 (10)	1. 국익과 공익을 우선하는 관련사업의 인식	5	4	3	2	1	/10
	2. 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감과 청렴한 품성	5	4	3	2	1	
건 강 (10)	1. 공직자로서의 자질 준수하고 술선하는 능력	5	4	3	2	1	/10
	2. 대인관계, 자기관리에서 성심껏 임하는 자세	5	4	3	2	1	
합 계							/100

※ 평가점수의 해당 등급 란에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 합계 기재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 (날인 또는 서명)

[별지 제4호서식]

임원 후보자 추천서(제13조제5항 관련)

부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일동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 직위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의결함

연번	성명	생년월일	비고

* 작성은 성명 가나다순

(별첨 1 : 추천 후보자 인적사항, 별첨 2 : 세부 추천사유)

20 년 월 일

부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별지 제5호서식]

임원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제13조제5항 관련)

1. 선발개요

가. ○○직위(성명 :○○○)의 임기만료(201○.○.○)에 따른 후임자
선발

나. 선발방법

- 근거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의결
- 방법 :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 중 택일
- 공개모집 등의 세부내용

구분	기 간	인 원	접수기간	비고
1차 공개모집		공개모집 ○명 추천방식 ○명		추천방식 병행
2차 공개모집				

다.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201○.○.○(월) 10:00, 임원회의실

- 응모자○명중 ○명을 임원 후보자로 추천

2. 모집개요

가. 1차 공고

- ○○신문(201○.○.○)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인터넷 등(201○.○.○~○.○),
해당 지방공사·공사 홈페이지(201○.○.○~○.○)
 - 각종 유관기관, 단체 등 공문발송 (필요시)
- ※ 접수기간 : 201○.○.○부터 201○.○.○까지(○일간)

나. 2차 공고 (필요시)

- ○○신문(201○.○.○)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인터넷 등(201○.○.○~○.○),
해당 지방공사·공사 홈페이지(201○.○.○~○.○)
- ※ 접수기간 : 201○.○.○부터 201○.○.○까지(○일간)

3. 응시자 현황 : ○ 명

응시번호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주요경력	비 고
				공개모집
				추천

* 학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및 최종학력과 졸업연도를 기재

* 주요경력란은 가능한 자세히 작성하되, 경력별로 재직기간(부터~까지) 기재

4.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총 ○명)

유 형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주 요 경 력	비 고
자치단체장 추천				
〃				
지방의회 추천				
〃				
〃				
이사회 추천				
〃				